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4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정

2. 주요내용

- 박물관, 조정경기장관리소의 도로명 주소 정정 : 중앙탑면 삼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- (1) 입법예고 결과 : 입법예고 생략
- (2) 규제심사 : 완료
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대상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·위치 (제15조제2항 관련)

사업소명	위치
· 충주시환경수자원본부	· 충주시 으뜸로 21 (금릉동)
· 충주시장묘시설관리소	· 충주시 목별길 256 (목별동)
· 충주시립도서관	· 본관 : 충주시 예성로 207 (교현동) · 분관(호암도서관) : 충주시 중원대로 3324 (호암동)
· 충주시공공시설관리소	· 충주시 중원대로 3306 (호암동)
· 충주시박물관	·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-28
· 충주시조정경기장관리소	·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[일부개정 2011. 7. 14 법률 제10827호]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

제3조(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)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. <개정 2010.4.7>

1.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이름
2. 시·군·자치구[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(이하 이 항에서 "행정시"라 한다)를 포함한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]의 이름
3. 행정구(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)·읍·면의 이름
4. 도로명
5. 건물번호
6. 상세주소(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)
7. 참고항목: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.
 - 가. 특별시·광역시와 시(행정시를 포함한다)의 동(洞)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: 법정동(法定洞)의 이름
 - 나. 특별시·광역시와 시(행정시를 포함한다)의 동(洞)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: 법정동(法定洞)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.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.
 - 다. 읍·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: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(제3조 관련)

1. 비용수반 요인

-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수반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3. 미첨부 사유

-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관련법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수반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-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